

貿易紛爭의 解決手段으로서 ADR活性化 方案에 관한 研究

신 군 재*

-
- I. 서론
 - II. ADR제도의 개요
 - III. 사례분석 및 시사점
 - IV. ADR 활용상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 V. 결론
-

I. 서 론

WTO의 출범과 E-Business의 확대로 인하여 세계는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였다. 국가간 거래의 특성은 직·간접적으로 모든 참여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특정국의 법에 의한 해석이나 분쟁해결이 곤란해지고, 당사자계약자유의 원칙에 입각한 국제거래의 관습과 관행이 보편화되었다. 또한 무한경쟁시대로 인해 국제시장에서 기업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져 기업들은 마케팅활동에 총력을 기울여야만 생존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마케팅활동을 하면서 우선적으로 분쟁을 예방하는데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이미 발생된 분쟁은 당사자들이 자체적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해야만 한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순응하기 위하여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소송을 대체하는 분쟁해결제도로서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대체적분쟁해결)'이 등장하였다. 우리 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기존의 중재법을 개정하고, 대외무역법상에 무역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이 조정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학계 및 무역현장 및 일반인에게 있어서도

* 영산대학교 유통무역학부 조교수

아직까지도 ADR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최종적인 효력을 갖는 소송이나 중재에 의한 해결만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역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ADR제도의 개념을 정리하고, 현행 우리 나라 무역분쟁해결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있는 ADR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ADR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II. ADR제도의 개요

1. ADR의 개념

WTO 출범과 디지털환경 도래로 인한 무한경쟁시대로 기업들이 생존하기 위하여는 분쟁으로 인해 소비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마케팅활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순응하기 위하여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송이외의 방법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대체적 분쟁해결)¹⁾이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다. ADR 제도에 대하여는 70년대 미국에서 논의가 시작되어 많은 국가에서 관심과 연구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²⁾. 미국의 경우에는 ADR제도 중 조정(mediation)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반면에 우리 나라의 경우는 중재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ADR은 구속력 여부, 제3자의 개입여부 및 역할 등에 따라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하여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기는 곤란하다. Coulson은 ADR을 “사적인 분쟁해결제도로서 강제적이라기 보다는 자율적인 해결제도이다”라고 하였다³⁾. Lieberman & Henry는 ADR을 “① 당사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분쟁을 법원 밖

1) 국내에서는 대체적분쟁해결제도, 소송외분쟁해결제도, 간이하고 새로운 민사분쟁해결제도, 재판외분쟁처리절차 등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나. 본 고에서는 대체적분쟁해결제도로 통일하였다.

2) Stephen B. Goldberg, Frank E.A. Sander, Nancy H Rogers, *Dispute Resolution: Negotiation, Mediation, and Other Process*, Little Brown & Co., 1992, pp.6-11

3) Robert Coulson, *Professional Mediation of Civil Disputes*,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1984, p.6

에서 해결하고, ② 기존의 소송에 의해 수반되는 고비용, 절차 지연의 폐해를 경감하며, ③ 법정 분쟁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일련의 절차”라고 정의 하였다⁴⁾. 종합하면, ADR은 전통적인 소송이외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모든 방법으로서 분쟁당사자들이 자신들의 분쟁을 자체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쌍방 모두 승리하는 승-승결과(win-win outcome)에 그 목표를 두는 분쟁해결 제도라고 할 수 있다 ADR의 목적은 비즈니스의 비용⁵⁾을 절감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법원 밖에서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다.

ADR은 당사자들의 주어진 여건에 적합한 분쟁해결수단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많은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 ADR의 유형은 제3자의 개입여부, 개입정도 및 역할에 따라 알선⁶⁾, 조정, 중재, 조정-중재⁷⁾, 간이심리⁸⁾, 옴부즈만⁹⁾, 법원 AD R¹⁰⁾ 및 사적판결¹¹⁾ 등 다양하다. 그러나 본 고에서는 ADR을 당사자간의 협상에 의한 해결방법과 대외무역법상의 해결방법인 조정에 의한 해결방법과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한 해결방법을 중심으로 사례와 그 유용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2. ADR의 특징

ADR은 분쟁해결에 있어 당사자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한 창조적인 해결방안 모색, 신속하고 저렴한 분쟁해결, 비공개 절차 및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4) Jethro K. Lieberman & James F. Henry, "Lessons from the ADR Movement," 53 U. Clev. L. Rev, Spring 1986, pp. 425-426

5) 비용에는 시간, 금전, 생산성, 신뢰성 감정적 소멸 및 비즈니스 관계 등을 포함

6) 대한상사중재원 및 대부분 대학교재에서는 알선과 조정을 구분하였으나, 본 고에서는 알선을 조정의 범주에 포함시켜 전개하였다.

7) 조정·중재(Med.-Arb.)는 제3자가 조정인을 역할을 하거나, 조정이 실패할 경우 중재인의 역할까지 하여 판정을 내리는 분쟁해결방법이다.

8) 간이심리(Mini-Trial)란 B2B분쟁 시 판결결과가 예측 불가능하거나, 감정이 악화되었을 경우 기업대표들이 참석하여 제3자가 공정한 입장에서 직접 해결하는 화해의 성격을 갖는 분쟁해결제도이다.

9) 옴부즈만(Ombudsman)이란 특정 조직내 구성원들의 불만이나, 고충사항 또는 행정청에 대한 민원을 제3자가 이를 대변해주고 응호해주는 제도로서 북유럽에서 이용하여 온 제도이다.

10) 법원ADR(Court Annexed ADR)이란 법원이 개입되어 행하는 ADR로서 법원중재, 법원조정, 모의배심심리 등이 있다. 우리나라 민사조정제도가 이에 해당된다.

11) 사적판결(Private Judging : Rent-a-Judge)은 판사의 역할을 할 수 중립적인 제3자로 하여금 재판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제도이다.

분쟁해결제도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간이한 절차, 신속한 해결, 저렴한 비용, 전문성 및 합의 지향성 등으로 인해 소액거래 분쟁에서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ADR은 국가기관인 법원을 통한 소송절차와 비교할 때 그 절차비용이 저렴하고, 간이한 절차로 인해 분쟁 금액이 적은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둘째,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분쟁해결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ADR의 기본 취지는 당사자들은 거래관습과 주어진 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협상을 하여 해결하거나, 자신들이 공정하다고 믿는 제3자를 개입시켜 자신들이 정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으로서 민주주의적인 가치와 당사자자치를 반영한 분쟁해결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예라 할 수 있다.

셋째, 전문가에 의한 해결로 새로운 형태의 분쟁에 적합하다. 중재인이나 조정인은 분쟁과 관련된 쟁점들에 관하여 정규적인 교육을 받고 오랜 기간 동안 그 직업분야에서 활동하여 얻은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에 의해 판단을 하므로 법체제가 아직 정립되지 않아 적용이 곤란한 새로운 형태의 분쟁해결에 적합한 분쟁해결제도이다.

넷째, 당사자의 양보를 유도할 수 있다. 당사자간 감정의 골이 깊을 경우 제3자의 개입은 분쟁자로 하여금 체면 상실의 위험을 최소로 하면서 양보를 유도할 가능성이 커지게 한다¹²⁾.

다섯째, 기업들이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함으로서 거래관계를 지속시켜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엄격한 법률적 판단에 의한 전부(全部)인가 전무(全無)인가를 결정하여 당사자간의 지속적인 관계를 파괴하는 소송과는 달리 ADR은 기업들이 증거제시를 위한 시간낭비를 최소화하면서 우호적으로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상호 신뢰를 쌓아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성장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3. 무역분쟁해결수단으로서 ADR의 필요성

ADR에 의한 분쟁해결제도가 관심을 갖는 배경으로는 첫째, 사회구조가 수

12) Jeffrey Z.Rubin, "Model of Conflict Management", Journal of Social Issues, Vol. 50, No.1, 1994, p.41

직적 사회에서 수평적 사회로 이동하면서 법관에 의한 결정이나 법률을 통한 권위주의적 해결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당사자간 우호적 해결을 시도하려는 사회의식의 변화이다. 둘째, 인권신장으로 인해 사회적 약자를 위해 단순하고, 보다 신속하며 비용이 적게드는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로서 각종 법에 ADR이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셋째, 법원의 소송 폭증으로 인한 법원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노력이다. 따라서 ADR은 소송과 관련하여 소송 대체적 절차로서 뿐만 아니라 소송 보완적 절차로도 법원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고, 행정부에서는 기존의 행정행위나 민원해결의 대체 또는 보완하는 방법으로 ADR을 이용하고 있다¹³⁾.

무역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할 경우에는 관할재판권 및 준거법 등의 문제이외에 소송의 결과에 대한 외국에서의 집행력 문제 등으로 인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국제사법제도로서 소송은 국가목적과 관계가 있어 법관이 당해 국가의 국민으로 임명되기 때문에 국가의식과 국민의식에 따른 편견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중재나 조정 등 ADR에서는 당사자들이 중립적인 제3자를 선임함으로써 이러한 편견을 없앨 수 있다¹⁴⁾. 또한 ADR은 소액분쟁에도 적합하다. 무역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금액이상이 되어야 실익이 있다. 따라서 분쟁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서로 자신에 적합한 분쟁해결제도를 선택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ADR은 절차진행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무역분쟁은 당사자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엄격한 채증법칙에 입각한 소송에 의한 해결은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는데, ADR에서는 On-Line ADR 등을 도입하면, 거리상의 문제, 시간상의 문제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¹⁵⁾.

이상과 같은 유용성으로 ICC의 ADR규칙¹⁶⁾, UNCITRAL의 조정규칙¹⁷⁾, 국

13) 김지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에 대한 법적, 제도적 고찰-미국의 ADR제도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02.12, p.7

14) 강이수, 국제거래분쟁론, 개정판, 삼영사, 2002. 7, pp. 355-366

15) 이미 선진국에서는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서 소비자와 전자상거래 사업자간의 분쟁을 처리하는 ‘가상 재판관제도’(Virtual Magistrate)나 ‘온라인 옴브즈만 제도’(Online Ombudsman Office) 등과 같은 ADR이 실험적으로 도입,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전자거래진흥원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서 on line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16) ADR Rules of ICC, 2001

17) ADR Rules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1 July 2001), Preamble Rules of Mediation UNCITRAL Conciliation Rules(1980), Article 1(Application of the Rules)

제3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조정규칙¹⁸⁾,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조정규칙¹⁹⁾ 등 국제기구에서 분쟁의 우호적 해결과 국제상사거래관계를 규율하는 새로운 분쟁해결제도로서 ADR규칙을 제정하고 있으며, OECD에서는 전자상거래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구제수단으로서 ADR를 적극 권고하고 있다²⁰⁾. 미국 AAA의 상사조정규칙²¹⁾, 중국의 조정규칙²²⁾, 일본해운집회소의 조정규칙²³⁾, 런던국제법원 조정절차²⁴⁾ 등 국제기구 및 각국 등에서도 ADR관련 규칙을 제정되었다. 우리 나라도 2001년 대외무역법이 개정되면서 조정제도를 신설하면서 ADR방법인 선적전 검사분쟁 뿐만아니라, 일반 무역분쟁도 ADR방법인 알선, 조정 및 중재에 의한 해결이 가능하게 되었다.

III. ADR 사례분석과 시사점

1. 사례분석

본 고는 당사자가 절차와 결과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ADR을 분류한 Goldber, Sander & Roger의 분류방식에 따라²⁵⁾ 우리나라 무역분쟁을 해결수단으로서 ADR을 협상, 조정 및 중재로 분류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협상은 절차와 결과에 대하여 모두 당사자들이 통제하는 해결방식이고, 조정절차는 제3자에게 위임하되, 결과는 당사자들이 통제하는 방식이며, 중재는 절차와 결과 모두 제3자에게 맡기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²⁶⁾. 특히 조정

18) ICSID Rules of Procedures for Conciliation Proceedings

19) WIPO Mediation Rules

20) 1999년 12월 파리에서 열린OECD회의에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는데, 소비자 피해구제는 ADR로 해결하도록 권고하였으며, EU에서도 전자상거래의 재판관할 및 준거법을 논의하면서 On line에 의한 ADR 촉진하는 정책선언을 함.

21) AAA Commercial Mediation Rules

22) The CPR Mediation Procedure(1998)

23) The Conciliation Rules of the Japan Shipping Exchange(1992)

24) LCIA Mediation Procedure(1999)

25) Goldberg, Sander & Rogers, op, cit, p.3

26) 허만, “미국에서의 사법재판에 의하지 아니한 분쟁해결”, 민사판례연구회(편), 민사판례연구 X IV, 박영사, 1992, p. 446

은 대외무역법과 중재규칙에 따라 알선에 의한 해결, 행정조정에 의한 해결 및 중재규칙에 의한 해결로 세분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1) 협상(negotiation) 사례²⁷⁾

국내 수입상 S사는 2001. 8. 11. 일본의 수출상 E사로부터 양파종자슈퍼익스프레스 300리터, 간사이익스프레스 100리터, 센슈추코다카 800리터를 각 단가 22,700엔, 21,000엔, 3,900엔(각 리터당)에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동 계약에는 양파종자는 수출상의 비용으로 종자보험에 가입할 것과 수출상은 종자에 대한 품질보증서를 발급하는 조건이 있었다. 국내 수입상 S사는 종자 판매상을 통하여 제주도 농민들에게 파종을 하였으나 품질보증서에 약정된 생육시기와 다르고 품질에도 문제가 있어 수출상 E사에 클레임을 청구하여 금원438,000,000원(슈퍼익스프레스 재배자 금 378,000,000원 + 간사이익스프레스 재배자 금 60,000,000원)정도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본 사건은 수출상 E사가 합의내용으로 이행하지 않자 중재를 신청하여 중재로 해결되었다.

협상은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통한 분쟁해결방법 즉 제3자의 개입없이 당사자들이 주도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효율적인 분쟁해결방법이다. 협상은 당사자 일방의 행위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의사과정이기 때문에 상호 협의를 통하여 상호평등의 원칙 하에 납득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아 승-승의 결과(win-win outcome)를 지향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이 협상과정을 통해 상호 양보를 행하여 합의에 도달하는 통합적 협상이 이루어 질 경우 기업들은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신뢰를 함으로써 거래가 지속될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 대외적으로 표출되지 않은 분쟁은 이와같이 협상에 의하여 해결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무역분쟁을 다루는 전문서적에서는 협상에 관한 내용이 거의 없을뿐만아니라 교육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결과로 클레임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력은 매우 약하여, 외국의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협상에 의한 해결방법은 당사자 일방이 합의한 내용대로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 사례처럼 중재나 소송절차를 다시 진행하여

27)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2003년 봄 제307호, pp.129-132

야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2) 조정 사례

(1) 알선(intercession, recommendation) 사례²⁸⁾

알선 제기자인 甲은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으로서 계약내용에 따라 운동기구를 선적하였으나, 乙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乙에게 물품대금 미화금액 36,421불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는 알선신청을 대한상사중재원에 하였다. 乙은 다른 B상사의 요청에 의하여 신용장을 개설하는 등 명목상으로는 자신이 계약자로 되어 있지만 실제 계약자는 甲과 B이라고 주장하고, 그러나 수입된 제품의 고가격으로 인해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신도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이유 등 계약외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금지급을 거절하였다. 대한상사중재원은 甲과 乙 및 B상사 모두가 참석하는 당사자회의를 주최하여 乙이 상기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B상사가 乙로부터 물건을 인수하여, 판매를 책임지기로 하는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였다.

알선은 대외무역법에 의한 분쟁해결제도로서 공정한 제3자인 대한상사중재원의 담당자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요청에 의하여 분쟁에 개입하여 조언과 타협권유를 통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조정절차를 말한다. 알선제도는 첫째, 제3자를 통해 상호 만족할 만한 범위의 다양한 해결책을 강구함으로써 쉽게 타협점을 찾을 수 있으며, 둘째, 합의한 내용대로 이행될 경우에는 무료로 제3자를 통해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고, 셋째, 이러한 해결을 통해 더욱 신뢰관계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거래를 지속할 가능성도 있으며, 넷째,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 새로운 거래처를 발굴해야 하는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 등을 가지고 있다. 위 사례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알선담당자가 당사자 회의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신규 마케팅비용의 절감 등의 설명함으로써 당사자간 우호적인 분쟁해결을 유도한 결과로 합의가 도출되었다. 알선에 의하여 해결제도는 위 사례처럼 제3자에 의해 합의가 도출되어 합의한 대로 이행될 경우에는 매우 유용한 분쟁해결제도이다. 현재 대한상사중재원의 알선에 의한 해결제도는 위의 사례처럼 제3자가 당사자간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

28)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2002년 여름 제304호, pp.118-121

는 높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내국인이 외국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클레임에서는 이러한 제3자가 당사자회의를 개최할 수 없어 낮은 성취율을 보여주고 있다²⁹⁾. 또한 알선은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위임을 받아 시행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제도는 협상과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재나 소송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한다.

(2) 행정조정 사례

신청인인 P 인터내셔널 상사는 미국의 B상사에 인쇄회로기판용 X-Ray발생 장치를 6대를 수출하였으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대한상사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였다. 피신청인인 미국의 B상사는 인도받은 물건이 품질규격에 맞지 않아 1대를 제외한 전량을 반품하였으므로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다. 조정위원회에서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였으나 피신청인의 거부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대외무역법상 행정조정절차에 의한 해결방법은 조정은 무역거래자 상호간 또는 무역거래자와 외국업체간의 물품 등의 수출, 수입과 관련된 분쟁에 발생한 경우³⁰⁾와 선적전 검사와 관련하여 수출자와 선적전 검사기관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³¹⁾에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들 분쟁을 해결해주는 조정절차를 말한다. 행정조정절차에 의한 조정은 당사자 일방이 조정신청서와 함께 일정액의 조정비용을 예납하여 대한상사중재원에 신청을 하여 진행되며,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거나, 조정신청을 철회하거나, 일방이 조정안을 거부하거나, 합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종료된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행정조정은 아직까지 그 실적이 미미하여 축적된 know-how가 없으며, 조정절차의 성공여부는 조정인에 달려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정인들도 조차도 중재와 조정과의 차이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지 못하며, 제3자로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 등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아직까지 행정조정에 의한

29) 대한상사중재원의 알선의 성공률은 양 경우 모두 합쳐 50%의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다(<http://www.kcab.or.kr>)

30) 대외무역법 제41조(무역거래자간 신속한 분쟁해결) 제4항

31) 대외무역법 제42조(선적전검사와 관련된 분쟁조정)제4항

조정사건은 위 사례와 같이 모두 실패하였다. 한편, 현행 행정조정에 의한 조정은 당사자가 조정안에 모두 수락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3) 중재규칙상 조정사례³²⁾

중재규칙상 조정은 당사자들의 합의로 중재신청을 한 당사자가 조정신청을 하게되면 접수통지일로부터 30일이내(국내15일)에 중재인명부상에서 가장 적합한 조정인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한다. 조정인은 양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사면진술과 증거에 대한 조사를 한 다음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제시하는 과정으로 조정절차를 진행한다. 당사자들이 조정안에 모두 수락하였을 경우 화해 중재판정을 내리게 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중재규칙상 조정제도는 한 건도 접수되지 않고 대부분은 중재절차로 진행되고 사문화된 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3) 중재(arbitration) 사례³³⁾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유럽산 소맥 35,000MT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장을 발행하였으며, 국내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았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물품가격의 상승으로 물품확보가 어렵다면서 가격을 올려달라고 하여 신청인측에서는 2차례에 걸쳐 가격인상과 선적연기를 하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측에서 당초 계약에 없었던 20%의 선수금 요구와 또 다시 선적연기를 요청하자, 계약해지통지와 함께 채무불이행과 지체보상금 미화670,325달러를 청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중재를 대한상사중재원에 신청하였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부에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각종 증빙자료와 증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피신청인에게 금원 미화529,450를 지불하라는 중재판정을 내렸다.

중재란 당사자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3자인 중재인(arbitrator)을 선임하여 그 분쟁을 중재인에게 맡겨 중재인의 판단에 양당사자가 절대 복종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 중재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하여 그 결과가 강제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32) 중재규칙에 의한 조정사례는 2003년5월 현재 한 건도 없음

33) 중재판정사례집 제10권(1999-2000)

국제적인 효력도 가지고 있어 무역분쟁해결제도로서 널리 알려진 제도이다.

위 사례는 당사자간의 계약불이행에 대하여 중재판정부에서 몇 차례 자체적으로 합의를 하도록 유도하였지만, 일방 당사자가 계속하여 합의사항을 스스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최후에 중재판정부에 의해 중재판정이 내려진 사례이다.

중재는 중재판정부가 당사자간 원만한 분쟁해결을 위해 해결방안을 창안하여 당사자를 설득함으로써 화해시키고, 화해판정을 내릴 경우에는 ADR에 가까운 해결수단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엄격한 채증법칙에 입각하여 판정을 지향할 경우에는 소송에 가까운 해결수단이라고 2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위의 사례처럼 중재제도는 과거의 사실을 토대로 중재판정을 내려질 경우 승소한 기업은 비록 단기적인 이익은 챙길 수 있지만, 향후 사업관계가 끊기는 문제점과 중재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2. 사례분석의 시사점

ADR은 “당사자자치의 원칙 ‘에 입각하여 분쟁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분쟁을 자신들이 정한 방법에 따라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당사자간 직접 협상과 제3자의 개입을 통한 협상인 조정 및 최종적인 판정을 내리는 중재가 있다. 지금까지 사례와 더불어 알아본 3가지 ADR방법들은 각각의 장점들과 단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협상은 분쟁해결방법 중 가장 좋은 방법으로서 당사자간 우호적으로 합의가 도출될 경우에는 시간과 경비가 절약되고, 당사자간 신뢰관계를 더욱 돋독히 하여 지속적인 거래를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협상에 의한 해결이 다른 ADR보다 유리한 점은 분쟁당사자가 절차와 결과를 직접적으로 통제·지배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협상에 의한 해결은 합의안에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이행을 할 경우에는 다시 중재나 소송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또 다른 경비나, 시간이 소요되는 2중 부담의 한계점을 가지게 된다.

둘째, 조정은 무역분쟁이 당사자간 협상에 의해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대외무역법과 중재법에 의하여 제3자를 개입시켜 당사자간 협상을 유도하여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는 분쟁해결제도이다. 조정에 의한 해결은

당사자간 협상이 결렬되었을 경우 관련 전문지식을 갖고 있으며, 공정한 제3자를 개입시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조정은 제3자의 개입을 통한 협상 또는 협상절차의 연장이기 때문에 협상없이는 조정이 있을 수 없다³⁴⁾. 그러나 조정은 협상과 마찬가지로 비용의 저렴, 시간의 절약, 과다한 법원업무 해소 그리고 분쟁당사자들이 분쟁해결 과정에 직접적인 참여 등의 장점³⁵⁾이 있는 반면에 당사자들이 타협안에 대하여 스스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종적인 효력을 갖는 중재나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 2중 부담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조정은 제3자를 개입시켜 당사자간의 협상을 유도하는 제도로서 제3자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ADR에 대한 인식부족, 전문적인 분쟁해결기법에 대한 교육부족 등으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도적으로 아직 정착화되지 못한 문제점 등을 가지고 있다.

셋째, 중재는 당사자간 분쟁을 소송에 의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로서 한번의 절차로 원만한 타협과 최종적인 해결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실무적으로 절차진행이 소송화되고 있으며, 판정이 내려질 경우 당사자간 관계가 승-패(win-lose)의 결과를 초래하여 거래관계가 끊김으로써 ADR의 장점을 살리고 있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분쟁당사자들은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간 지속적인 거래여부, 새로운 고객창출에 따른 마케팅비용, 분쟁금액 등등 자신의 주어진 상황에 따라 자신들에게 가장 적합한 분쟁해결제도를 선택하여야 한다. 그러나 많은 대학과 업계에서는 무역분쟁이 발생되면 중재합의가 있으면 중재로 그렇지 못하면 소송으로 해결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어 ADR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ADR방법중 제3자에 의한 해결방법인 조정이나 중재는 제3자의 역할에 따라 신속하고 저렴하며,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여 당사자간 지속적인 거래를 유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들 역시 ADR제도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아직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ADR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하겠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 무역분쟁해결수단

34) Stephen B. Goldberg, Frank E.A. Sander & Nancy H. Rogers, op.cit., p.103 ; Christopher Moore, "How Mediation Works", in Lewick R., Litterer J., Saunders D. and Minton J., eds., Negotiation : Readings, Exercises and Cases, 2nd ed., Irwin Inc., Boston, 1993, p.445

35) Stephen Meili, Tamara Packar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n a New Health Care System : Will it Work for Everyone?", The Ohio State Journal on Dispute Resolution, Volume 10 1994 No.1, p.26.

으로서 ADR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지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난 후 향후 ADR제도를 활성화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IV. ADR 활용상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1. ADR 활용상의 문제점

1) ADR제도의 인식부족

무역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으로서 우리나라는 대한상사중재원이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대외무역법 및 중재법에 의해 지정된 알선에 의한 조정, 행정조정, 중재규칙상 조정 및 중재 등 ADR기관이다. 그동안 대한상사중재원의 클레임예방과 중재제도중심의 홍보는 소송에 비해 무역분쟁의 유리한 장점만을 강조함으로써, 기업체들이 클레임을 예방하는데, 그리고 중재의 유용성에 대하여 무역관련 교수, 학생, 변호사 및 기업체에게 인식을 제고시키는데 매우 기여하였다. 그러나, 대한상사중재원의 사건접수현황인 <표 1>에서 보는 바와같이 중재사건은 전체의 20%정도 밖에 되지 않고, 년 평균 금액이 US\$600,000일 정도로 거액인 경우에만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분쟁 특히 금액이 적은 분쟁해결에는 중재가 유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재제도중심의 인식제고는 ADR개념뿐만 아니라 무역분쟁해결수단으로서 ADR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한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부작용은 기업들로 하여금 간편하게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려, 기업의 신뢰성을 해칠뿐만 아니라, 손해액을 더욱 크게 만들어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또한 무역분쟁시 협상력 부족은 무역분쟁이 발생할 경우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상대방을 설득시키기 보다는 지나친 감정적인 호소에 의존하는 협상을 함으로써 외국기업들의 주장에 일방적으로 끌려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배상해주는 결과를 초래하거나, 적극적으로 외국기업들에게 클레임을 제기하기보다는 포기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도록 하였다.

<표 1> 대한상사중재원 클레임 접수현황 (단위 : 건, US\$1,000)

	2000			2001			2002		
	건수(A)	금액(B)	B/A	건수(A)	금액(B)	B/A	건수(A)	금액(B)	B/A
중재	40(15%)	24,640	616	65(23%)	39,152	602	47(18%)	47,028	1,000
알선	259	23,944	92	213	13,099	61	220	22,466	102
계	299	48,585		278	52,251		267	69,494	

** 건수의 %는 총 사건 수에 대한 비중(3년 평균 전체의 19%)

2) 국내외 ADR제도에 대한 정보부족

UNCTAD, ICC에서는 기존의 중재규칙이외에 조정(mediation)절차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고, 전자상거래를 위한 OECD에서는 ADR에 대한 분쟁해결을 권장하는 등 국제적인 기구에서 ADR을 활용한 분쟁해결기법에 대비하고 있다. 또한 미국 및 유럽지역 그리고 가까운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지역에서도 중재이외에 조정절차를 제정하였고, 우리 나라에서도 대외무역법상에 조정제도를 제정하여 ADR에 대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관련전문서적에서도 ADR제도 뿐만아니라 조정제도에 정확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무역실무관련 서적에서도 중재제도에 대한 설명은 총 76권중 71권이 소개하고 있는 반면에 ADR에 대하여는 단 2권만 설명되어 있다. 특히 이를 무역관련 서적들에서는 ADR제도의 하나인 조정은 그 형태도 매우 다양하게 실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조정, 중재규칙 상 조정, 민사조정 제도 등의 개념을 혼용되어 설명하고 있다. 조정제도의 법적 구속력 여부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도 아직까지 한 건도 접수되지 않은 중재규칙상의 조정제도를 제외하고는 현행 대외무역법상 조정제도는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정의 법적 구속력에 대하여 50%가까운 책들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제상무분야에서도 ADR에 대한 연구도 매우 미약하여 기업들이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2> 무역실무관련 서적의 ADR관련 소개³⁶⁾

총 대상	ADR		알선		조정			중재		
	설명	내용무	설명	내용무	구속력	불구속력	내용무	설명	내용무	
권수	76	2	72	53	23	37	18	17	71	5

3) 분쟁해결기법교육전무

우리 나라 기업들의 142개 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업의 87%가 년 평균 10건 정도의 클레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³⁷⁾. 그러나 대한상사중재원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 중 약 54%정도밖에 외국 상대방에게 클레임을 제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³⁸⁾. 이는 분쟁해결기법에 대한 교육이 대학뿐만 아니라 전문 교육기관이 전혀 없으며, 분쟁이 발생하면 변호사를 찾아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서적 및 전문 교육기관의 부재는 국내 기업들이 외국인과 어떻게 협상을 할 것인가?, 외국인의 주요 협상관행과 전략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직접적인 협상을 하는 것이 좋은지 제3자 개입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유리한지?, 외국의 ADR기관을 어떻게 활용하여야 하는지?, 중재는 어떠한 경우에 활용해야 하는지? 등등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데 필요한 자체적인 분쟁해결능력을 떨어뜨려 외국인에게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제도적 문제점

ADR제도는 법적 효력의 부여여부, 소송과 결합형태, 중재와 조정의 결합 형태, 제3자의 역할 등에 따라 다양한 ADR제도가 파생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조정절차를 행정조치나 민원해결절차의 하나로서 각 관련법에 조정제

36) 본 조사는 영산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책으로서 1993년도부터 2003년초에 발간된 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결과이다.

37) 임은정, “무역클레임발생원인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p. 22(조사대상기업 : 서울소재 종합상사 42개, 무역업 64개, 무역+대리업 23개 등 총 142개업체)

38) 대한상사중재원, 무역분쟁의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1991.12 p.34

도를 도입하였고³⁹⁾, 또한 민사소송법 및 소비자보호법 등과 같이 특정 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조정제도를 도입하였다. 특히 무역분쟁의 경우는 기존의 대외무역법에서 알선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한 규정이외에 대외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한 행정조치의 일환으로 조정제도를 도입하였고, '조정'이라는 용어가 너무나 다양하게 사용함으로써 조정제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외무역법상 조정은 조정절차에 대한 know-how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⁴⁰⁾, 분쟁해결 그 자체보다는 민원 업무를 무리없이 처리하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어, 국내 업체들이 외국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클레임을 조정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대외무역법상 조정제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⁴¹⁾ 조정이 실패한 경우 중재나 소송으로 다시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당사자들에게는 이중부담을 주게되는 문제점을 갖게 만들었다.

2. ADR활성화방안

1) ADR제도의 인식제고

기존의 중재의 중심의 교육을 ADR중심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대한상사중재원과 무역학파의 “클레임과 중재” 관련 과목을 “클레임과 ADR”으로 대체하여 협상, 조정 및 중재에 대한 골고루 학생들에게 인식시킴과 동시에 기타 ADR방법들에 대한 내용도 교육시켜야 한다. 또한 국제기구 및 외국의 중재제도에 대한 내용못지 않게 국제기구 및 각국의 ADR제도에 대한 교육도 포함하여야 시켜야 할 것이다. 국제기구 및 외국에서는 알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가장 보편적으로 ADR 또는 조정(mediation)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각국마다 ADR제도의 법적 효력이 상이하기 때문에 국제기구 및 각국의 ADR제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제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기존의 무역클레임을 해결하는 전문기관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 사법

39) 2003년 5월 현재 32개의 법률 및 시행령에서 조정제도를 두고 있음

40) 2003년 5월 현재 3건밖에 접수되지 않았으며, 모두 조정이 실패하였음.

41)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02조(조정의 종료)

상의 모든 분쟁을 해결하는 전문 ADR기관으로 탈바꿈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각국의 ADR제도에 정보를 수집하여 기업체에게 알려야 하며, 기업들이 외국기업과 발생된 분쟁을 ADR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학회나 연구소 등에 용역을 주어 ADR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용어의 개념을 통일화하고, 무역관련전문서적의 저자들에게 제공하여 이들 교재의 내용들이 수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외국의 ADR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이다. 국내에서 ADR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외국의 ADR 기관들과 중재협정이외에 ADR 관련 업무에 대한 업무협정을 체결하여 내국인이 외국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클레임도 실질적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절차의 간소화이다. 인터넷의 보급으로 적은 비용으로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 알선, 조정, 중재를 할 수 있는 절차에 관한 규정 및 시스템을 갖추어 신속하고, 간편하며, 비용이 저렴한 ADR의 장점을 살려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고객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어야 할 것이다.

2) 분쟁해결기법에 대한 guideline 마련

외국에서는 ADR의 개념과 ADR에 의한 분쟁해결기법들에 대한 연구와 전문서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는 이에 대한 실적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클레임 및 중재제도 설명회”의 강좌내용을 중재제도내용과 분쟁해결기법의 내용을 병행하는 내용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내의 분쟁해결사례와 기법들을 적극 발굴하고, 분쟁해결에 많은 Know-how를 가지고 있는 협상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 분쟁해결기법들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여 이를 학계나 기업에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에서는 “클레임과 중재”라는 과목에서는 중재제도중심의 교육에서 국제 협상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으로 전환하고, 분쟁해결에 대한 case study를 통한 기업들의 분쟁해결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한상사중재원과 학계의 노력으로 기업들이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는 기업들이 주어진 상황에서 직접적인 협상을 하는 것이 좋은지? 제3자개입을 통해 협상하는 조정에 의한 해결이 유리한지?, 외국의 ADR 기관을 어떻게 활용하여야 하는지? 중재는 어떠한 경우에 활용해야 하는지?

에 대한 guideline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guideline은 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히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함으로써 분쟁당사자간에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거래관계가 지속되도록 도움을 줌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제고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3) 협상에 대한 교육강화

ADR은 당사자간의 자체적인 분쟁해결제도이다. 당사자간 자체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협상력이라고 할 수 있다. 협상력을 키우기 위하여는 대학의 클레임관련 수업에서 주입식 교육보다는 클레임 사례를 토대로 학생들이 토의를 통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토론식 수업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무역분쟁의 모델케이스를 개발하고, 또한 기업들의 무역분쟁을 협상에 의해 해결한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발굴하여 이를 교재화하는 학계와 대한상사중재원간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외국인과 분쟁해결을 위해 어떻게 협상을 할 것인가? 외국인의 협상관행과 전략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계약협상과 분쟁협상이 어떻게 다른지?, 협상에서 제의한 제의내용이 소송이나 중재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대안을 어떻게 마련하여야 하는지? 직접 협상에 나서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대리인을 내세우는 것이 나은지? 등등에 대한 협상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여야 한다.

4) 제3자의 분쟁해결능력제고

당사자간의 분쟁을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제3자를 개입시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ADR제도이다. 소송이나 중재처럼 엄격한 증거주의에 입각하기보다는 상호 일정한 양보를 통한 원만한 분쟁해결하도록 제3자가 개입되는 조정에 의한 해결제도는 제3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알선에 의한 해결방법중 당사자회의를 주최하였을 경우 당사자간 합의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알선담당자들이 그동안 축적된 know-how를 통해 당사자들로 하여금, 원만한 타협을 통한 상호 지속적인 거래를 할 경우 이익에 대한 설명, 감정적 대립의 해소 및 타협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정인이나 중재인에 대한 ADR에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역할 및 분쟁해결기법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일정한

시간 교육을 받도록 하거나, 조정인이나 중재인들이 분쟁해결경험에 대한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정규적인 세미나나 workshop을 개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5) 제도적 문제점 보완

대한상사중재원은 ADR에 대한 개념 및 각 기법들에 대한 용어들을 정리한 용어집을 마련하여 관련 서적에서 용어를 통일화하는데 앞장을 서야한다. 특히 대외무역법상 알선, 조정 및 중재규칙상 조정 등에 대한 용어등을 조정(mediation)으로 통일하고, 당사자들이 각 조정절차를 선택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여 진행하는 현행 대외무역법상의 조정제도에 당사자가 합의할 경우에는 민사조정, 소비자분쟁조정처럼 강제성을 부여하거나, 중국처럼 당사자들의 합의서를 화해판결로 하거나⁴²⁾, 일본처럼 중재판정을 내리도록 하거나⁴³⁾하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현행 조정제도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의 알선담당자와 기존의 조정위원들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알선담당자의 분쟁해결경험과 조정위원의 전문적 지식을 결합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대한상사중재원을 분쟁전문기관으로의 육성 및 발전시킴으로써 지금까지 논의한 모든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중재가 ADR의 궁극적인 목적인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당사자간의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지속시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중재인의 권한을 더욱 확대하고, 중재인에 대한 분쟁해결기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무국경화시대로 접어들면서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국제 무역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마케팅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

42) The CPR Mediation Procedure(1998) 제7조(분쟁합의)

43) The Conciliation Rules of the Japan Shipping Exchange Inc.(1999) 제14조(분쟁해결합의)와 제16조(조정절차에서 중재절차로의 변경)

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날로 국제 사회에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ADR제도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ADR은 소송에 비하여 많은 유용성을 가지고 있고, 그 형태도 매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학계나 기업 등에서 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부족은 무역분쟁이 발생되면 반드시 중재나 소송으로 밖에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오인하도록 함으로써 기업들의 클레임 해결능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기업들의 클레임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ADR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우리 나라, 국제기구 및 각국의 ADR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무역상무분야에서 협상기법과 각국의 ADR 제도 및 국제기구의 ADR규칙에 대한 연구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한상사중재원은 ADR기관으로서 위상을 재정립하고, 기업들의 분쟁해결능력을 제고시킬수 있도록 분쟁해결의 가이드라인등을 만들어 이를 계몽·홍보함과 동시에 모델 분쟁사례를 학계에 제공하여 학생들에게 ADR활용방안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본 고에서도 지적한 바와같이 먼저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ADR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쉽게 분쟁을 해결하는 것인지?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둘째, 분쟁과 기업의 마케팅활동간의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지, 기업들이 자체적인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실증적인 조사를 행하지 않고 단지 제도적인 측면에서만 ADR제도의 유용성을 제시하여야 하였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역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ADR의 개념을 정립하고자 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參考文獻

- 강이수, 국제거래분쟁론, 개정판, 삼영사, 2002. 7
- 김경배, “조정합의 성립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 김지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에 대한 법적, 제도적 고찰-미국의 ADR
제도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02.12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2002년 여름 제304호
_____, 중재, 2003년 봄 제307호,
_____, 중재판정사례집 제10권(1999-2000)
_____, 무역분쟁실태조사보고서, 1991
_____, 부산지역 무역분쟁 실태조사보고서, 1996
_____, 알기쉬운 중재법·규칙, 2002.12
- 오현석, “Online에 의한 ADR시스템”, 중재. 대한상사중재원, 2000 가을
- 이주원, “한국조정제도의 발전방향”, 중재연구 한국중재학회, 제12권
- 임은정, “무역클레임발생원인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2000전자거래분쟁조정사례집」, 한국전자거래진흥원,
2001.4
- 최장호, “우리 나라 알선, 조정상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무역학회지, 제27권
제4호
- David F. Simon, "Mediation- The Best Way to Resolve An Employment
Dispute", Hawaii State Bar Association, 1997.10.6([http://library.lp.
findlaw.com/alternativedisputeresolution](http://library.lp.findlaw.com/alternativedisputeresolution))
- Harris A.E., Sink C.M. & Wulff R.W, ADR : A Practical Guide To Resolve
Construction Dispute,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1994
- Jeffrey Z.Rubin, "Model of Conflict Management", Journal of Social
Issues, Vol. 50, No.1, 1994
- Jethro K. Lieberman & James F. Henry, "Lessons from the ADR
Movement," 53 U. Clev. L. Rev, Spring 1986
- Kenji Tashiro, "Conciliation or Mediation during the Arbitral Process",
Journa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1993

- Lewick R., Litterer J., Saunders D. and Minton J., eds., *Negotiation : Readings, Exercises and Cases*, 2nd ed., Irwin Inc., Boston, 1993
- Robert Coulson, *Professional Mediation of Civil Disputes*,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1984
- Stephen B. Goldberg, Frank E.A. Sander, Nancy H Rogers, *Dispute Resolution: Negotiation, Mediation, and Other Process*, Little Brown & Co., 1992
- Stephen Meili, Tamara Packar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n a New Health Care System: Will it Work for Everyone?", *The Ohio State Journal on Dispute Resolution*, Volume 10 1994 No.1, p.26.
- UNCITRAL, ADR Rules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1 July 2001), Preamble Rules of Mediation UNCITRAL Conciliation Rules(1980), Article 1(Application of the Rules)
- AAA Commercial Mediation Rules
- The CPR Mediation Procedure(1998)
- LCIA Mediation Procedure(1999)
- The Conciliation Rules of the Japan Shipping Exchange(1992)
- <http://www.seokyeong.ac.kr/~nomos/conciliation/node24.html>
- <http://www.japanem.or.kr/forum/46/f2000-46-03.html>
- <http://tobit.yonsei.ac.kr/%67Elawlab/8-4.htm>

ABSTRACT

A Study on the Ways to expand ADR System As a Method of International Trade Dispute Resolution

Shin, Koon Jae

Dispute plays a key role in maintaining the desirable performance of trade transaction. In an effort to stay competitive in a global marketplace, the Korean companies need to become more aware of alternatives to costly and time-consuming litigation. Korean companies, therefore, should be more concerned with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and should utilize ADR to settle their disputes effectively and efficiently. ADR encompasses all process of dispute resolution as a substitute for the traditional litigation. Generally, three kinds of ADR are available in Korea: Negotiation, mediation, and arbitration. This article investigates reasons why ADR isn't used well in Korea and suggests ways how ADR can work best in international trade disputes. To expand ADR system in international trade disputes, it is very important for both the company and the scholar to recognize the concept and usefulness of ADR system.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also must help both Korean companies and scholars recognize the mechanism of dispute resolution and utilize ADR system in international trade disputes.

Key Words : ADR, Trade Dispute Resolution, Negotiation, Mediation,
Arbitration